

判의審決을 받은자가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査定 또는審決의送付를 받은날로부터三十日以内에抗告審判을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八條 (準用規定) 特許法中第六條、第七條、第十一條乃至第三十七條、第四十條、第四十四條、第四十五條、第四十七條乃至第五十一條、第五十四條、第五十六條乃至第六十條、第六十二條、第六十三條、第六十七條、第六十九條乃至第七十一條、第七十三條乃至第八十八條、第九十一條乃至第一百十三條、第一百五條、第一百十六條、第一百十八條、第一百九條乃至第一百四十九條의規定은實用新案에關하여 이를準用한다

第五章 罰 則

第二十九條 (罰則) ① 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者は三年以下の懲役 또는三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一、他人의登錄實用新案인物件과同一의物件을業으로하여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한者

二、他人의登錄實用新案인物件과類似한物件을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한者

三、他人의登錄實用新案인物件과同一 또는類似한物件을業으로輸入한者

四、登錄이 있는境遇에第二十八條의

規定에依하여準用하는特許法第七十五條第三項의規定에依한權利를侵害한者 및權利를侵害한物件을登錄前에業으로輸入한者

②前項의罪는告訴가 있어야 이를論한다

第三十條 (登錄詐稱等) 다음各號一의一에該當하는者は一年以下の懲役 또는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一、詐僞의行爲로實用新案登錄을받거나 또는判決을받은者

二、登錄實用新案이 아닌物件 또는 그物件의容器、包裝類에實用新案登錄標識와混同하기위한表示를한者

三、登錄實用新案이 아닌物件 또는物件의容器、包裝類에實用新案登錄標識를붙이거나 또는實用新案登錄標識와混同하기위한表示를한것을販賣 또는擴布한者

第三十一條 (沒取等) ①第二十九條第一項各號의一에該當하는行爲를組成한物件 또는그行爲로부터生한物件은 이를沒取하거나被害者의請求에依하여被害者에交付할것을宣渡할수있다

第三十二條 (偽證罪) ①法律에依하

여宣誓한證人、鑑定人 또는通譯人이特許局이나 그囑託을 받은法院 또는官署에對하여虛僞의陳述을한 때에는六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處한다

②前項의罪를犯한者가 그事件의査定 또는審決이確定되기前에自首한 때에는 그刑을減輕 또는免除할수있다

第三十三條 (秘密洩泄罪) 特許局職員 또는 그職에 있었던者가職務上知得한實用新案登錄出願中の考案이나實用新案出願者의秘密을洩泄하거나盜用한 때에는三年以下の懲役 또는五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第三十四條 (過料) 本法에서準用하는民事訴訟法第二百七十一條第二項 또는同法第三百三十九條의規定에依하여宣誓한者가特許局에對하여虛僞의陳述을한 때에는五萬圓以下에過料에處한다

第三十五條 (同前) 特許局으로부터證人、鑑定人 또는通譯人으로서召喚된者가正當한理由없이召喚에應하지 아니하거나 그義務를다하지 아니할 때에는五萬圓以下の過料에處한다

第三十六條 (同前) 特許局으로부터證據調査에關하여書類其他의物件의提出 또는提示의命令을받은者가正當한理由없이 그命令에應하지 아니할 때에는五萬圓以下の過料에處한다

第三十七條 (同前) 非訟事件簡次法

第二百六條乃至第二百八條의規定은前三條의過料에準用한다

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②(廢止法令) 樞紀四千二百七十九年十月軍政法令第九十一號特許法中實用新案에關한規定은 이를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施行當時繫屬中인實用新案審判 및 其他의簡次는舊法에依한다

④(同前) 本法施行當時舊法에依한實用新案權의存續期間은舊法에依한다

이상으로 續 · 古資料篇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本資料에 關心을 갖 고 우리 나라 特許制度發達史를 지켜보아 주신 讀者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編輯者)

1승권

第十四條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①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登錄한 날로부터 十年으로 終了한다. 但 登錄出願日로부터 十二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正當權利者에게 登錄을 한 때에는 前項十年의 期間은 無效로 된 登錄이 登錄된 날의 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十五條 (實施許諾의 審判請求)

①實用新案權者가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을 實施하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實用新案을 實施할 수 없는 境遇에 그 他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이 實施許諾을 얻을 수 없는 境遇에는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但 그 實施를 要할 實用新案이나 意匠이 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이 發生한 날로부터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이 實施되는 境遇에 反對로 相對方의 登錄實用新案에 對하여 實施許諾을 求할 境遇에 그 相對方이 正當한 事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相對方의 實施許諾을 얻을 수 없는 境遇에는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十六條 (實施權者가 支給할 補償金 및 供託)

前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權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에 對하여 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實施權의 登錄)

①登錄實用新案의 實施權은 이를 登錄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을 後에 取得한 者 및 그 實用新案權을 目的으로 하는 後에 設定한 質權者에게 對하여 實施權의 效力을 가진다.

②第十一條乃至 第十三條 또는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十五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實施權은 登錄이 前項의 效力을 가진다.

③第十五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權은 그 登錄前에 設定한 質權者에 對하여 도 그 效力이 있다.

第十八條 (登錄의 無效原因)

實用新案登錄이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審判에 依하여 이를 無效로 하여야 한다.

一、登錄이 第二條、第三條 또는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되었을 때

二、登錄이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三十五條의 規定에 違反되었을 때

三、登錄을 받은 權利를 承繼하지 아니

한 者 또는 登錄을 받은 權利를 冒認한 者에 對하여 登錄된 때

四、登錄이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三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條約 또는 이에 準할 것에 違反되었을 때

五、登錄이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三十五條의 規定에 違反하게 된 때 또는 特許法 第三十六條에 規定한 條約 또는 이에 準할 것 이외에 違反하게 되었을 때

第三章 登錄

第十九條 (實用新案原簿登錄)

①特許局에 實用新案原簿을 備置하고 實用新案權의 實施權 또는 이를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保存、移轉、變更、消滅、處分의 制限其他 法令에 定한 事項을 登錄한다.

②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十條 (實用新案登錄證發給)

實用新案의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이를 實用新案原簿에 登錄하고 實用新案登錄證을 發給한다.

第二十一條 (實用新案公報)

①特許局은 實用新案公報를 發行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公報에는 登錄實用新案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다.

依하여 登錄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四章 審査, 審判 및 抗告審判

第二十三條 (審査主義) 實用新案의 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審査官으로서 하여금 이를 審査하게 한다.

第二十四條 (審判請求事項) ①審判은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에 規定한 外에 다음事項에 對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一、第十八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無效

二、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에 對한 確

認

②前項第一號의 無效審判은 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다. 但 審査官은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十八條第一項第三號에 該當한다는 理由로 無效審判을 請求하지 못한다.

③第一項第二號의 確認審判은 利害關係人에 限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除斥期間) ①前條第一項第一號의 無效審判은 實用新案의 登錄日로부터 二年을 經過한 때에는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期間은 第十八條第五號에 該當하게 된 날의 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二十六條 (補償金審決) 第十五條의 審判에서는 補償金에 對하여 도 이를 審決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抗告審判) 査定 또는 審